

운영규정개요

■ 이용정원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22인으로 하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 기준 만료유효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재가급여(1일)〉

8시간이상 [단위: 원]

구분 / 등급	3등급	4등급	[5~인지]등급
재가급여(주야간보호)	59,640	58,010	56,360
본인부담금(15%)	8,940	8,700	8,450
식비 / 간식비(비급여)	7,200 / 1,000	7,200 / 1,000	7,200 / 1,000
월평균이용료(25일기준)	428,500	422,500	416,250

〈기타 비급여 항목〉

-경관영양유동식:3,600원(1식) / 상급침실이용료: 없음 / 등외: 50,000원(1일)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구분	시설급여
일반	15%
기타의료수급권자	9%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치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기초수급권자	0%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이용 중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선 결제 후, 후 청구 할 수 있다.
5. 기관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미용비용은 무료이나, 보호자 요청에 의한 아·미용원 출장비용은 실비 수납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보증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

【의료로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①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 ②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①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대리인(보호자)은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3. 시설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